

제9조 (서비스 월 이용료 관한 사항)

[첨부 1] 노인장기요양기관 기본 수가 (월 한도액)

본인부담금 내역	기초수급자	0% 부담
	차상위계층	12%, 8% 부담
	일반수급자	20% 부담

[첨부 2]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급여제공 및 부담내역

분 류	금액(원)
노인요양시설	2024.01.01 기준 적용
① 장기요양 1등급	84,240
② 장기요양 2등급	78,150
③ 장기요양 3~5등급	73,800

[첨부 3] 기관 비급여항목 제공 및 부담내역

비 급 여 현 황	비급여항목	금액(원)	내용	산출근거(원)	등록일
	식재료비	3,700	1일 3회	$3,700 \times 3 \times 30 = 11,100$	2024.01.01
	간식비	1,500	1일 1회	$1,500 \times 30 = 45,000$	2024.01.01
	이미용비	자원봉사	월 1회	0	2024.01.01
	상급침실료	-	-	제15조 2의 ④에 의함	2024.01.01

제10조 (이용료 및 비용 변경)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.

1.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
2.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
3.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
4. 변경절차는 변경된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유선이나 문자 발송을 한다.